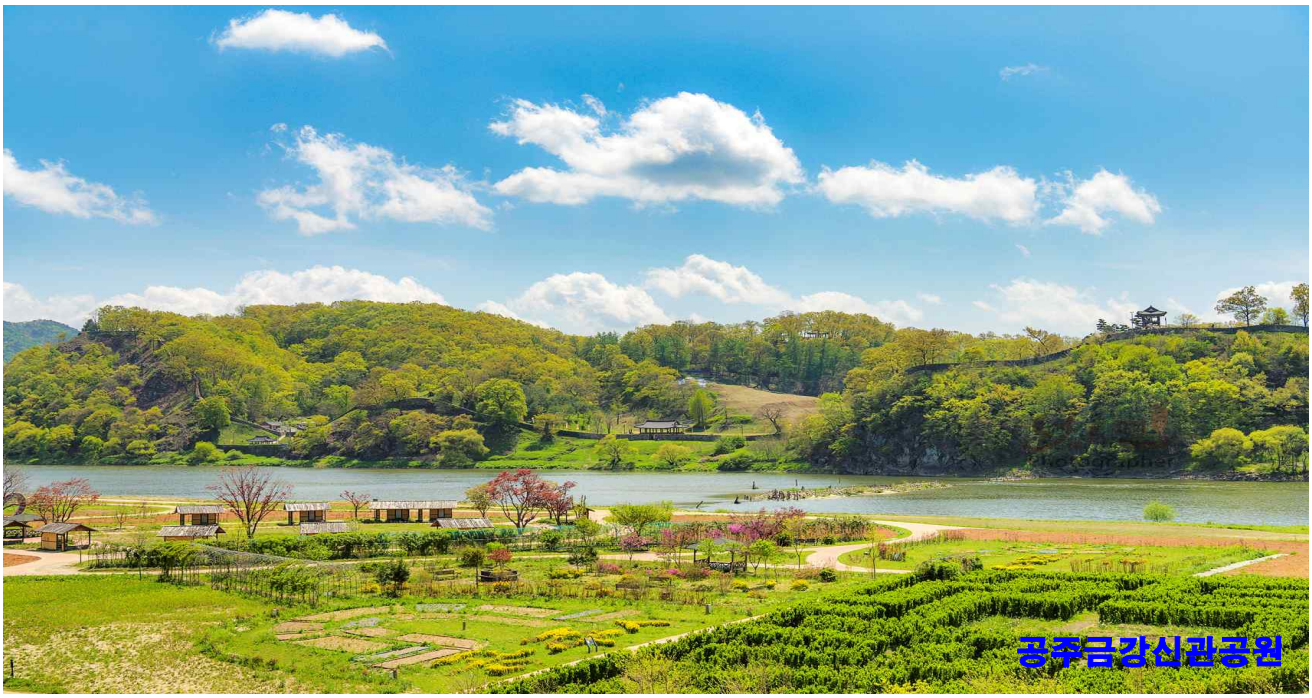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시 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828호 2022. 9. 14.(수)

www.gongju.go.kr



선람	기관의장	회람						

공 주 시

발행 : 공주시 편집 : 시민소통담당관실 ☎ 041-840-2544

우)352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공　고】

제2022-1928호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3

공주시 공고 제2022-1928호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 월 14 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10.19. 공포, '23.1.1. 시행)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답례품 선정, 기금의 설치·운용 등의 위임된 사항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조 항	주요 내용	비고
목적 (제1조)	**(목적)**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1)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등 (제2조~제6조)	**(답례품 선정위원회)**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안§2) **(답례품의 종류)**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과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함(안§3)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함(안§4)	

조 항	주요 내용	비고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로 선정, 선정 시 14일 전 공고(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기준 등 명시)(안§5) **(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기부자의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안§6)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7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기부금 기탁서 접수,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부자 본인 여부 확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등,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을 위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은행의 납부 외에 행정행위로서 기탁서 접수 절차에 대한 처리 근거로 위탁 가능)(안§7)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제8조~제21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기금의 재원은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함(안§8)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지정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안§9) **(기금의 사용 목적)** 기금사업의 목적에 따라 기존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 기부금의 모집·운용을 위해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안§10) **(기금운용관)** 기금운용관(과장)과 기금출납원(팀장) 지정(안§11)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12~§21)	
부칙	**(부칙)** 시행일(2023.1.1.),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규정(안§2~§3) -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우선 답례품의 선정,	

조 항	주요 내용	비고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준비 절차 이행 - 기금의 설치 이전 행위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운용 기본계획의 수립 행위 사전 준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행정지원과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52 / 전화: 041-840-2051 / FAX: 041-840-2307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행정지원과 대외교류팀 (☎ 041-840-2051)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307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주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선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 포함]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및 농특산물 업무 관련 공무원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기타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⑤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공주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공주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공주시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공주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공주시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공주시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공주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10.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

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영 제5조제1항에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금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운용을 위해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1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

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에서 제5조에 따라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우선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및 제12조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용을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성·운용하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답례품 선정위원회 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④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기금 계좌를 설치·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 해 연도의 경우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기부금계좌가 일반회계 등으로 예치·관리하고 있는 경우 기금계좌가 개설되면 즉시 이체하여 관리·운용해야 한다.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부칙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